

부산지방법원 2023. 4. 19 선고 2021나64689 판결 [선박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3. 4. 19 선고 2021나64689 판결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0. 7 선고 2020가단104529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청률

담당변호사 김규진, 석지혜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륜

담당변호사 김경호

변론종결 2023. 3. 22.

판결선고 2023. 4. 19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0. 7. 선고 2020가단104529 판결

주문

1.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, 피고는 원고에게 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

2022. 12. 1.부터 2023. 4. 19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총비용의 50%는 원고가 부담하고, 50%는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[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선박(이하 ‘이 사건 선박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,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].

이 유

1.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(“1. 기초사실” 및 “2.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”)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 “경료되었다” 다음에 “그 후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2012. 2. 3. 채무자 피고, 근저당권자 H조합, 채권최고액 325,000,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, 2015. 7. 3.

채무자 피고, 근저당권자 H조합, 채권최고액 318,000,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변경등기가, 2019. 6. 27. 채무자 피고, 근저당권자 H조합, 채권최고액 330,000,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.”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3면 “나.의 2)항” 아래에 “3) 피고는 2021. 12. 15. N에게 이 사건 선박을 대금 300,000,000원에 매도하고, 2021. 12. 24.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.”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“[인정근거]”란에 “갑 제19호증의 기재”를 추가한다.

2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여부

살피건대,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C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

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고,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.

나.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

1) 2008. 12. 8.자 매매계약 당시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08. 12. 8.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와 F이 각 1/2 지분씩

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한편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90883 판결), 이 부분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) 2011. 11. 30.자 매매계약 당시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8호증의 1, 2의 기재, 제1심법원의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, 이 법원의 주식회사 O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, 즉 ① 2011. 11. 30.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F의 1/2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은 C의 처인 K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, 위 K 명의의 O은행 계좌의 돈은 C의

자금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1/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의 일부라도 부담하였다거나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, ② 2012년 이후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의 대부분이 C의 처 K 명의의 통장 등으로 이체되어, 이를 C이 사용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, 2011. 11. 30.자 매매계약 당시에는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명의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소결론

원고가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2011. 11. 30.자 매매계약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20. 4. 6.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위 명의신탁약정은 2020. 4. 6. 해지되었다.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. 12. 15. N에게 이 사건 선박을 대금 300,000,000원에 매도하고 2021. 12. 24.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줌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.

따라서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C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서, 위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무의 대상으로서 위 대금 상당액의 1/2인 150,000,000원(= 300,000,000원 × 1/2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. 11. 30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. 12. 1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. 4. 19.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우중, 판사 위은숙, 판사 신승아

별지